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알바 면접·이력서·합격 후 취소, 구직자가 알...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알바 면접·이력서·합격 후 취소, 구직자가 알아둘 권리: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기준

루리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작은 가게 알바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기준법), 거짓 구인광고 금지(직업안정법), 모집 관련 금품 수령 금지는 따로 있어요. 막히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작은 가게 알바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기준법), 거짓 구인광고 금지(직업안정법), 모집 관련 금품 수령 금지는 따로 있어요. 막히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2026-10-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조회 화면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채용절차법은 조회된 화면에 [시행 2020. 5. 26.]로 표시돼 있어서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노동청·노동위원회가 해요.

1 1. 먼저 확인: 내 알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될까

법	적용 기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제3조)	https://www.law.go.kr/ 법령/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고, 4명 이하의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규정만 적용 (제11조,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 법령/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의 거짓 구인광고 금지(제34조), 모집 관련 금품 수령 금지(제32조)	https://www.law.go.kr/ 법령/직업안정법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

작은 가게라면 채용절차법의 반환·고지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래 내용은 알아 두면 면접장에서 기준이 돼요.

2 2. '알바 면접 사장님 연락': 면접 전후에 이런 건 이상해요

- **면접비·교육비·보증금 요구:**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든 응모자에게 모집과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직업안정법 제32조). 채용심사 목적의 비용도 서류 제출 비용 외에는 구직자에게 물릴 수 없어요(채용절차법 제9조, 30명 이상 사업장).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력서에 쓰게 하거나 증빙으로 건을 수 없어요(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7조).
- **개인 연락:** 이력서의 연락처는 채용 목적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채용과 무관한 사적 연락이 계속되면 증거(문자 캡처)를 남기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창구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창구와 번호는 **공식 확인**하세요.

3 3. '알바 이력서 사진 몇개월까지 해당되나요?'

이 표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 시기 기준은 확인한 법령 조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대신 법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 이력서 사진을 반드시 붙이라는 요구는 직무와 무관한 용모 정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30명 이상 사업장 대상).
- 이력서는 채용이 끝난 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기간을 정하고, 채용 확정 전에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4조).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해요(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4

4. '채용광고 합격여부 문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결과 알림과 서류 반환

상황	법에 있는 내용	근거
서류를 이메일·홈페이지로 냈다	접수 사실을 문자·이메일·전화 등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채용절차법 제7조
채용 일정이 밀린다	채용 일정, 심사 지연, 과정 변경을 알려야 해요	제8조
합격자가 정해졌다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제10조
불합격 후 서류를 돌려받고 싶다	반환 청구 시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발송, 특수취급우편 이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단서에서 우편요금까지만 구직자 부담 가능)	제11조, 시행령 제2조·제5조
이메일·홈페이지로 냈거나 자발적으로 낸 서류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11조 제1항 단서

채용서류 보관의무 위반, 반환 규정을 채용 확정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제11조 제6항)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제17조 제3항). 채용 여부 고지(제10조) 위반만을 직접 정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5 5. 합격한 뒤 출근 전에 취소됐다면

-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제19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어요(제20조).
- 합격 통보만 받은 단계인지, 근로계약이 이미 맺어진 단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구분은 개별 사건 판단이 필요해서 **공식 확인**(고용노동부 1350)이 필요해요.

6 6. 가상 예시

A씨(가상)가 직원 8명 카페에 지원해 "내일부터 나오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채용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에 시급, 근무시간, 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면 돼요.

7 체크리스트

- 사업장 인원(30명, 5명 기준)을 물어봤다
- 면접비·교육비·보증금 요구가 없는지 확인했다
- 이력서에 직무와 무관한 정보(키·체중·가족 직업)를 쓰라는 요구가 없었다
- 합격 통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었다
- 근로계약서(임금, 시간, 휴일)를 받고 사본을 보관했다
- 문제가 생기면 날짜별 대화 기록을 캡처했다

8 용어 정리

-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예요.
- **채용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작품집 등 구직자가 낸 서류를 모두 말해요.
- **소정근로시간**: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 **과태료**: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9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30명 이상 사업장이고 종이로 낸 서류라면 채용 확정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메일·홈페이지로 낸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Q. 면접 결과를 안 알려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30명 이상 사업장이면 채용 여부 고지는 의무예요(제10조). 다만 제10조 위반만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https://www.moel.go.kr> (<https://www.moel.go.kr>)).

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직업안정법: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
-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https://www.moel.go.kr>)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1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